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THE DONGNAM LAW FIRM, Notaries & Attorneys-at-Law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7층

(대치동, 홍우빌딩)

【별지 제33호서식】

대표전화 : 539-5011

F A X : 539-5010

등부 2018 년 제 4405 호

인 증 서

업 무 협 약 서

(주)누리펀딩대부 & (주)누리펀딩 (이하 "갑"이라 한다)와 농업 [redacted]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게 제공한 대출 등 금융관련 상품 (개별거래 또는
한도거래/기간 1년) 에 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 (이하 "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갑"이 "을"에게 P2P 플랫폼을 통하여 취급하는 대출 등
금융관련 상품에 관하여 대출금의 지급 및 상환 등 쌍방의 업무 범위와 의무,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이라 함은 (주)누리펀딩에서 운영하는 P2P 플랫폼(Peer to Peer Platform)을
말한다.
2. "지정계좌"라 함은 "을"이 매출채권 상품판매대금(이하 "매출채권" 이라고 한다)을 지급
받기 위해 쇼핑몰 등 납품처에 통보하는 입금계좌를 말하며, 동시에 "갑"의 "플랫폼"에
등록한 "을"명의로의 "나의 출금계좌"를 말한다.

(지정계좌: "을" 명의, 국민은행, 447901-04-224297)

[별지 제35호의2서식]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8년 제	4405	호
인 증		
위 업무협약서 _____에 기재된		
협약인 “갑” 주식회사	누리편당 사내이사	김 정 권
협약인 “갑” 주식회사	누리편당대부 사내이사	김 정 권
협약인 “을” 농업회사	_____	대표 _____
대리인 강	병	남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명 날인이 각 그 본인들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 등의 대리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 _____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8 년 12 월 20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7층 (대치동, 홍우빌딩)		
공증담당변호사		